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1732
-----------	------

2020년 9월 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0년 8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2020년 9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가. 제안이유

- 주차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공영주차장 금지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의 주차금지체계를 개별지점 단위 5개 금지에서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금지 체계로 변경함.(안 별표1 비교3)
- 주차장별 요금 차등화를 위해 해당 금지 요금에 지역별 공시지가 변수 적용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하단)
-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를 위해 시장의 요금조정 범위를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변경함.(안 별표1 비교4)
- 주차금지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1금지 지역(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 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으로 명문화함.(안 제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5.14.~2020.6.3.

○ 의견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1998년 이후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공영 주차장 주차금지체계를 현행 5금지 체계에서 3금지 체계로 변경하고 현행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적용 및 녹색교통지역내 인상율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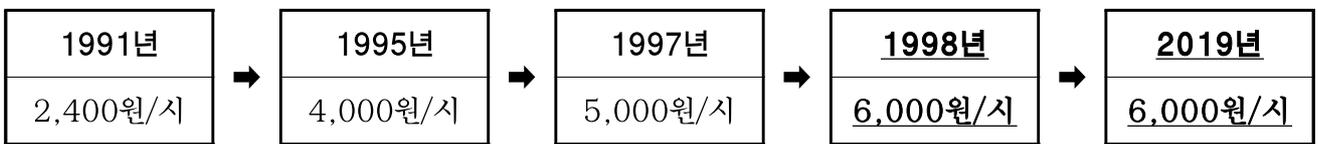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현행 조례는 도심, 용도지역, 환승 등을 고려하여 5개 주차금지와 그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1금지의 경우 '90년대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총 10개 지역내로 고정하고 있으며, 2~5금지는 주차장 위치에 따라 개별 주차장 단위의 금지를 설정함으로써 이용자 인식과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음
- 먼저, 금지 체계를 살펴보면 금지 선정시 지하철 역세권의 교통수요 밀집지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등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교통수요관리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녹색교통지역 등 강화된 주차수요 감축

방안 적용을 위한 유연한 급지 체계 개편안 마련이 요구되어 왔음

- 주차요금을 살펴보면 '98년 이후 현재까지 주차요금이 동결됨으로써 주차면당 건설비 증가,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에 대응하는 주차수요 관리정책이 미흡하게 운영되어 왔고 지역별 특성인 토지이용가치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별 주차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등 주차요금의 합리적 개선과 현실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주차요금 변화(1급지 노상주차장 기준) : 21년간 동결



■ 주차요금 부과 근거

- 현행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등에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¹⁾ 있어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 및 별표 1에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을 1~5급지로 등급별로 나누고 1회, 1일, 월정기권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 하고 있음²⁾

1)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2) 급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언급되지 않으며 서울시 조례의 「별표1」

■ 5급지 → 3급지 체계 및 월정기권 기준 변경(안 별표1 비고란 제3호, 주차요금표)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3호는 급지의 기준을 지역별, 기능별로 구분한 현행 5급지 체계를 지하철역 반경을 기준으로한 3급지 체계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따르면 '90년대 교통혼잡지역인 사대문을 비롯한 10개 지역을 1급지로 정하고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함에 따라 개별 주차장 단위로 급지가 지정되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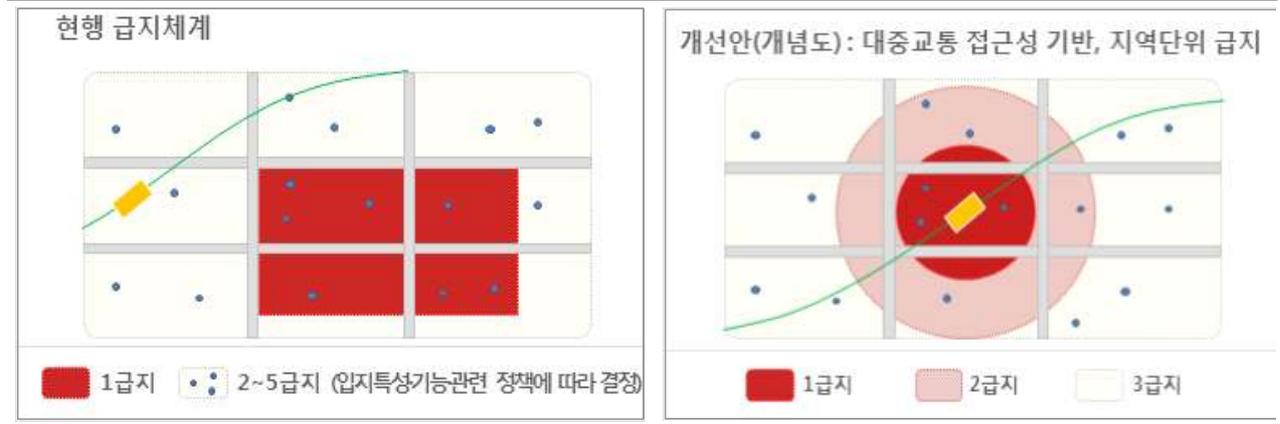
- 하지만, 1급지를 제외한 2~5급지는 용도지역, 환승기능, 야간 주차, 주택가 주차 등 급지 선정기준이 직관적이지 않고 주차장 위치에 따라 개별 단위로 급지가 정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해당 주차장에 대한 급지 인식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역세권 교통수요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5급지에 포함되는 등 자가용 이용수요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정책추진과는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5급지 체계를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지하철역 중심의 3급지 체계로 조성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명료한 급지체계를 만들려는 동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주차금지 개정내용

금지		구 분	
현행	1 금지	(1) 4대문 주변지역 일대 (3) 영등포지역 일대 (5) 잠실지역 일대 (7) 청량리지역 일대 (9) 미아지역 일대	(2) 신촌지역 일대 (4) 강남·서초지역 일대 (6) 천호지역 일대 (8) 용산·마포지역 일대 (10) 목동지역 일대
	2 금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금지	1·2·4·5 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4 금지	지하철환승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 중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5 금지	(1) 4 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4 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개정안	1금지	환승역 300m 이내 / 비 환승역 100m 이내 + 기존 1금지	
	2금지	환승역 500m 이내 / 비 환승역 300m 이내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3금지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다만,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의 경우 기준점을 어느 곳으로 두느냐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급지가 바뀔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급지 선정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 기준별 급지변경 사례 : (예시) 서울역 ~ 서울역서부관광버스주차장



기존 상대적으로 낮은 급지로 분류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급지 상승³⁾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요금 인상에 대한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가 위탁중인 주차장의 경우⁴⁾ 기존 급지에 따른 요금을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낙찰된 만큼 급지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계약기간에 따른 급지 조정을 명확히 하여 소송 등의 분쟁으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일부 서울시 급지체계를 따르는 자치구 위탁 주차장의 경우에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3) 공영주차장 주차급지체계 개편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08호, 2020.4.23)
3급지→1급지(17개소), 4급지→1급지(13개소) 등 상위급지로 변경 주차장 다수 존재
 4)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1774, '20.8.12)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주차장 : 총 134개소 17,467구획
 - 공단직영 : 46개소 12,522구획 / 제3자위탁 : 88개소 4,945구획
 ○ 제3자 위탁(민간업체) 현황 / 위탁기간 : '19. 11. 1. ~ '20. 12. 31.(1년 2개월)
 ※ '지갑없는 주차장' 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수탁업체와 1년 2개월 간 재계약

- 아울러, 급지변경에 따른 기본요금은 변경되지 않으나 기존 노외주차장 월정기권 기준이 주간에서 전일로 변경되어 동일 금액으로 주간에서 전일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외주차장 정기권 요금 인하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내용[별표 1]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현행)			(개정안)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전 일	야 간
1급지	400	250,000	100,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8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00,000	40,000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20,000	-	-	-
		기타 50,000				
5급지	50	30,000	20,000	-	-	-

■ 주차요금 산정시 공시지가 변수 적용(안 별표1 각주)

- 안 별표1의 각주 내용은 3급지 체계의 1회, 1일, 월정기권 이용 요금 산정시 '공시지가 변수'를 요금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주차요금 산정 기본식

<p>• 주차요금 산정 기본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주차 요금}_{A,B} = (\text{기본 요금}_{A급지}) \times (\text{지가변수}_{B법정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 요금_{A,B} : B법정동 내 A급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요금 • 기본 요금_{A급지} : A급지의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 (A = 1급지, 2급지, 3급지) • 지가 변수_{B법정동} : $\sqrt{\langle B \text{동 평균공시지가} \rangle + \langle 서울시 평균공시지가 \rangle}$... (B = 서울시내 법정동) 	<p>〈공시지가 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눈 값을 4제곱근 한 것 • 적용기간 : 매년 변동되는 공시지가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3년 단위로 주차요금 산정
---	---

- 동 개정안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것은 공영 주차장의 급지기준이 환승역 중심으로 변경될 경우 지역별 요금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지역별 요금차이가 크고⁵⁾, 공영 주차장 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주차장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에서 (최대 620% 인상) ‘공시지가 변수’를 반영함으로써
공시지가의 극단적 차이가 급격한 요금인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역 형평성을 요금산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된 급지에 공시지가 변수를 적용 하고 최대 인상을 75%를 적용하면 전체지역 평균 인상율은 약 35%(69원) 로 나타남

5)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방안 연구(서울연구원, 2016.12) : 각 행정동별 지가 변수 산출
- 명동2가 지가변수는 오크동 지가변수의 213.5배에 달함

행정동	평균	지가변수	
서울시 전체	₩ 2,964,906	1.00	
상위 5개 행정동	명동2가	₩ 37,989,452	12.81
	충무로1가	₩ 33,332,368	11.24
	명동1가	₩ 29,520,068	9.96
	종로2가	₩ 27,178,445	9.17
	충무로2가	₩ 22,047,804	7.44
하위 5개 행정동	개화동	₩ 328,119	0.11
	양평동	₩ 295,000	0.10
	오쇠동	₩ 215,723	0.07
	과해동	₩ 181,415	0.06
	오크동	₩ 167,184	0.06

※ 급지별 주차요금 변동내역

현행	변경	현행요금 (5분기준)	변경요금 (5분기준)	요금 인상률	공시지가 변수
1급지(29개소)	1급지(28개소) 2급지(0개소) 3급지(1개소)	515원	629원	23%	0.8~1.5
2급지(24개소)	1급지(7개소) 2급지(11개소) 3급지(6개소)	250원	269원	8%	0.8~1.2
3급지(31개소)	1급지(17개소) 2급지(8개소) 3급지(6개소)	150원	223원	48%	0.8~1.2
4급지(20개소)	1급지(13개소) 2급지(2개소) 3급지(5개소)	100원	163원	63%	0.5~1.2
5급지(2개소)	1급지(2개소) 2급지(0개소) 3급지(0개소)	50원	80원	60%	0.7~0.9
전체지역 평균		261원	330	35%	0.5~1.5
(녹색교통지역 평균)		474원	654	39%	0.8~1.5

- 다만, 동 개정안은 공시지가 변수를 3년마다 산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시지가가 인상될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3년 주기로 조금씩 인상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안은 기존 주차요금표 하단에 명시된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 인근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 즉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한 요금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권 요금 변동과 함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급격한 요금증가가 발생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월정기권 요금 편성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련 개정내용[별표 1 주차요금표 하단]

현행	개정안
※ <u>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u>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공시지가 변수는 3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 근거(월 4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주차요금 <u>별도 근거 삭제</u> 급지별 주차요금 적용

■ 주차요금 조정범위 50% → 80%로 변경 (안 별표1 비고란 제4호)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4호는 시장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요금이 저렴한 4,5급지의 환승주차장이 1,2급지로 변경⁶⁾됨에 따라 일부지역의 경우 6배 이상의 요금 상승⁷⁾이 이어질 수 있고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 불만이 예상되는 바, 녹색교통지역에서 주차수요 30% 감축을 위해 적용 예정인 최대 인상율 75%⁸⁾ 한도로 정하여 요금인상의 파급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6) 3급지→1급지(17개소), 4급지→1급지(13개소) 등 상위급지로 변경 주차장 다수 존재

7) 급지 변경에 따른 요금인상 사례

• 3급지→1급지 변경사례	▸ 송파구 성내역 주차장 : 267% 인상 [150원/5분 → 550원/5분]
• 4급지→1급지 변경사례	▸ 성동구 옥수역 주차장 : 350% 인상 [100원/5분 → 450원/5분]
	▸ 강남구 일원역 주차장 : 300% 인상 [100원/5분 → 400원/5분]
• 5급지→1급지 변경사례	▸ 노원구 화랑대역 주차장 : 620% 인상 [50원/5분 → 360원/5분]

8) 공영주차장 주차금지체계 개편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08호, 2020.4.23)

- 시장의 인상을 조정범위는 '12년 10월 경북궁 관광버스 주차요금 인하율(34%)을 고려하여 당초 30%에서 50%로 인상되었음을 감안 할 때⁹⁾ 동 조항은 주변 특수여건을 반영한 일부 주차장에 대한 경감을 목적으로 조정된 바 있음
- 하지만 금번 개정안에서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인상율을 조정 하기 위해 시장의 조정범위를 80%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주차장 이용요금 권한범위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주차요금의 당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을 80% 범위 내에서 경감 또는 인상할 근거로 인용 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예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녹색교통지역 주차요금 **25% 인상시행 효과**

- 주차요금 인상 시행 3개월간('20.1.1~3.31) 모니터링 결과, 녹색교통지역내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8% 감소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행1개월 4% → 시행2개월 10% → **시행3개월 10%**

<녹색교통지역 요금인상 전·후 전체 차량 주차수요 변화>

(단위 : 대/일)

구 분	시행 전 ('19.12)	시행 후 주차대수(증감율)			
		평균	'20.1월	'20.2월	'20.3월
녹색교통지역(전체 차량)	7,679	7,062(Δ8%)	7,367(Δ4%)	6,918(Δ10%)	6,930(Δ10%)

※ 공휴일은 분석에서 제외

- 녹색교통지역 교통특별대책 2020년 승용차통행량 10% 감축, 2030년 30% 감축목표에 부응하는 주차수요관리 정책 시행

▶ 주차요금을 현행대비 **25% 인상시 주차수요 10% 감축, 75% 인상시 30% 감축 가능**(시영 주차장의 주차수요탄력성 -0.4를 적용시)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6호) 검토보고서(241회 임시회)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정기권 우선 발행 (안 별표1 비고란 제6호)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6호는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가 정기권을 발행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현재 운행 중인 160여대의 전기택시 외에 2019년에 3,000대의 전기택시 도입 계획을 수립¹⁰⁾한 바 있고 마을버스도 올해 37대의 전기버스를 도입 예정¹¹⁾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보급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 중 친환경적 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서울시 시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관광버스 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안 별표1 비고란 제7호)

- 안 별표1의 비고란 제7호는 관광버스 주차장 주차요금을 승용차 1구획의 2배로 하되, 최초 2시간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 결제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되는 경우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10) “2019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계획”(택시물류과-12841, 2019.4.11.)

11) 서울시, 그린모빌리티 선도할 전기버스 도입 박차… 하반기 166대(보도자료 2020.7.20)

기존 요금체계가 5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시간당 3천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에는 10분당 1,000원을 징수 하였으나, 이를 해당구역 승용차 구획을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요금 기준으로 해석됨

- 다만, 개정된 요금기준과 기존 요금제를 비교할 때, 1, 3급지의 경우 공시지가와 2시간내 50% 할인의 영향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요금이 기존요금제와 많은 차이를 보일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광버스 주차장에 대한 합리적인 예상 요금 산정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버스 운영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개정 전후 시간별 관광버스(노상) 주차요금

(단위 : 원)

구 분	현행			개정안		
	2시간	3시간	4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급지	6,000	12,000	18,000	12,000	24,000	36,000
2급지				6,000	12,000	18,000
3급지				3,600	7,200	10,800

* 공시지가는 1로 가정

■ 녹색교통지역, 환승 주차요금 경감 대상 제외 (안 제7조제1항제4호)

- 안 7조제1항제4호는 기존 1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적용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50% 이내 할인 조항을 “1급지 제외”가 아닌 “녹색교통지역 제외”로 수정하는 것임

- 서울시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도심을 만들기 위해 사대문 안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선정하고 차량진입 억제 및 친환경교통수단 확대 정책¹²⁾을 시행 중에 있고, 녹색교통지역은 강화된 주차수요 감축방안 적용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급지체계 변경으로 기존 1급지에서 제외된 지역¹³⁾의 주차장의 경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감 여부에 대한 검토와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 월 정기권 관련 (안 제18조제3항)

- 안 제18조제3항은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의 정기권요금을 기존 5급지 요금 기준에서 3급지 야간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의 정기권 요금이 5급지 기준으로 산정되나, 개정안에 5급지가 삭제되어 새로운 기준금액 마련이 필요하고 개정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경우, 3급지 전일 정기권 기준요금이 10만원으로 현행 요금(3만원)과 비교할 때 급격한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월 정기권 요금을 3급지 야간요금(4만원)을 적용하는 것은 요금 인상을 폭을 최소화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송사업자의 불편을

12) 서울시, 12.1.부터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 친환경 녹색교통 천국 탈바꿈(보도자료, 2019.11.26.)

13) 기존 1급지(4대문 주변지역, 신촌지역, 영등포지역, 강남·서초지역, 잠실지역, 천호지역, 청량리지역, 용산·마포지역, 미아지역, 목동지역)

최소화 한다는 점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해 월 정기권 요금을 야간요금만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최소 금액 선정이 외의 요금 선정기준의 당위성이 결여되는 바,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요금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의 정기권요금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정기권 금액(5급지 요금기준) → 3만원(주간) + 2만원(야간) - 주·야간 모두 이용 : 월 3만원	- 정기권 금액(3급지 야간 요금기준) → 월 4만원

■ 주차전용건축물,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기준 1급지 지역반영 (안 제5조제2항, 제16조2항, 제21조제1항)

- 안 제21조제1항은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주차금지체계 개편으로 1급 지역이 환승주차장 중심으로 바뀔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의 제한 대상 지역을 기존 1급지역(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 지역)으로 명시하는 것임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¹⁴⁾, 서울시는 그간 4대문 주변지역 등

14) 주차전용건축물,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법 위입 근거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1급 지역이 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 지역에서 환승주차장 중심으로 바뀔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 지역을 기존 1급지 지역으로 바꾸려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구분	내용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제5조)	<p>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p>
노외주차장 외 부대시설 설치기준(제16조)	<p>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제21조)	<p>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p>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3년 단위로 공시지가 변수를 반영하여 주차요금 산정하는 것이 잦은 주차요금 인상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고, 서울시 미세먼지 시준제와 함께 조례 시행일을 맞추어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시지가 산정 기간 “3년”을 “5년”으로 수정함(동 개정조례안 별표1)
- 개정된 조례 시행을 “2020년 10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수정함(동 개정조례안 부칙)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32
----------	---------

제안년월일 : 2020년 9월 8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3년 단위로 공시지가 변수를 반영하여 주차요금 산정하는 것이 잦은 주차요금 인상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고, 서울시 미세먼지 시준제와 함께 조례 시행일을 맞추어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공시지가 산정 기간 “3년”을 “5년”으로 수정함(동 개정조례안 별표1)
- 개정된 조례 시행을 “2020년 10월 1일”에서 “2020년 12월 1일”로 수정함(동 개정조례안 부칙)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 개정조례안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동 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시장 발의안)	수정안(전문위원실안)
<p>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생략)</p> <p>②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p>	<p>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지역-----</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p>	<p>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p>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
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
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
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
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
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
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
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1.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생략)
- ② ~ ④ (생략)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
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
공)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
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
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
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을 적용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
준 등) ① -----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
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
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급지 요금 -----

-----.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
준 등) ①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 ② ~ ④ (개정안과 같
음)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
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
공) ①·② (개정안과 같
음)

③ (개정안과 같음)

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율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신촌지역 : 정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4) 강남·서초지역 : 반포대로·올림픽대로·분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5) 잠실지역 :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오금로·올림픽로·위례성대로·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6) 천호지역 : 올림픽로·상암로·양재대로·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7) 청량리지역 : 제기로·전농로·서울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도봉로·오현로·오패산로·정릉로·삼양로·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목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

라. (현행 바목과 같음)

라. (개정안과 같음)

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
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
한 곳으로 시장이 지
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
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
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생략)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
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
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
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생략)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
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
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
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

4 .

-----80%-----
----- . (이하 생략)

5. (현행과 같음)

6 .

----- .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
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
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삭 제>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 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은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9. (생략)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에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8. (현행 제9호와 같음 같음)

9. -----

-----1,2,3
급지 -----

7. (개정안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
한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표 생략)

<비 고>

<신 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현행과 같음)

<비 고>

1.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
역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상
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
로·율곡로·종로·난
계로·퇴계로·통일로
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
하고 있는 대지

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
· 이화여대길·대흥로
· 구 용산선철도·양화
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
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
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
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라. 강남·서초지역: 반포
대로·올림픽대로·분
당수서로·남부순환로
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
하고 있는 대지

마. 잠실지역: 올림픽로·
석촌호수로·삼학사로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개정안과 같음)

<비 고>

1. (개정안과 같음)

가. ~ 차. (개정안과 같
음)

· 잠실로 · 올림픽로 · 송파대로 · 신천로 · 오금로 · 올림픽로 · 위례성대로 ·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바. 천호지역: 올림픽로 · 상암로 · 양재대로 · 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사. 청량리지역: 제기로 · 전농로 · 서울시립대로 · 천호대로 ·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아. 용산 · 마포지역: 강변북로 · 마포대로 · 충정로 · 통일로 · 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자. 미아지역: 도봉로 · 오현로 · 오패산로 · 정릉로 · 삼양로 · 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차. 목동지역: 목동동로 · 목동서로 · 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12. (생략)

2.~13. (중전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2.~13.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020년 12월 1일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를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을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를 “3급지의 월정기권 야간요금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금지”를 “해당 금지 요금”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로·울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라. 강남·서초지역: 반포대로·올림픽대로·분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마. 잠실지역: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오금로·올림픽로·위례성대로·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바. 천호지역: 올림픽로·상암로·양재대로·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사. 청량리지역: 제기로·전농로·서울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아. 용산·마포지역: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자. 미아지역: 도봉로·오현로·오패산로·정릉로·삼양로·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차. 목동지역: 목동동로·목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전일	야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 급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8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8.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9.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제1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 ② (생략)</p> <p>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1」의 <u>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3급지 월 정기권의 야간요금을 적용한다.</u></p>
<p>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p> <p>1. <u>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u></p> <p>2.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 ----- ----- ----- ----- -----</p> <p>1. <u>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② (생략)</p>	<p>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 고> 1.~2. (생략)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울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

개 정 안

③ -----

--. ----- 해당 급지 요금 -----

-.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전일	야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 고> 1.~2. (현행과 같음)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현행	개정안
<p>는 대지</p> <p>(2) <u>신촌지역 :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3) <u>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4) <u>강남·서초지역 : 반포대로·올림픽대로·분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5) <u>잠실지역 :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오금로·올림픽로·위례성대로·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6) <u>천호지역 : 올림픽로·상암로·양재대로·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7) <u>청량리지역 : 제기로·전농로·서울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8) <u>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9) <u>미아지역 : 도봉로·오현로·오패산로·정릉로·삼양로·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10) <u>목동지역 : 목동동로·목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u></p> <p>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p> <p>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p> <p>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p>	<p>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p> <p>(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p> <p>(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p> <p>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p> <p>(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p> <p>(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p> <p>(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p> <p>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p>

현행	개정안
<p><u>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u></p> <p>마. 5급지</p> <p>(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p> <p>(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p> <p>(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p> <p>바. (생략)</p> <p>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p> <p>5. (생략)</p> <p>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은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p> <p>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p>	<p>라. (현행 바목과 같음)</p> <p>4. ----- ----- ----- -----80%----- ----- . (이하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6. ----- ----- ----- ----- .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7. <삭 제></p> <p>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에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p>

현행	개정안
<p>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p>	<p>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p>
<p>9. (생략)</p>	<p>8. (현행 제9호와 같음 같음)</p>
<p>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p>	<p>9. ----- ----- -----1,2,3급지----- ----- ----- ----- -----</p>
<p>[별표 3]</p>	<p>[별표 3]</p>
<p>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표 생략)</p>	<p>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현행과 같음)</p>
<p><비 고></p>	<p><비 고></p>
<p><신 설></p>	<p>1.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한다.</p> <p>가. 4대문 주변지역: 사직로·울곡로·종로·난계로·퇴계로·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나. 신촌지역: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다. 영등포지역: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라. 강남·서초지역: 반포대로·올림픽대로·분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마. 잠실지역: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p>

현 행	개 정 안
<p>1.~12. (생략)</p>	<p>· 오금로·올림픽로·위례성대로·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바. 천호지역: 올림픽로·상암로·양재대로·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사. 청량리지역: 제기로·전농로·서울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아. 용산·마포지역: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자. 미아지역: 도봉로·오현로·오패산로·정릉로·삼양로·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차. 목동지역: 목동동로·목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2.~13. (중전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p>